

# 奎章閣 ‘地方官衙 記錄物群’의 構造와 記錄物의 再整 方向\*

김태웅\*\*

- 
- |                                  |                   |
|----------------------------------|-------------------|
| 1. 머리말                           |                   |
| 2. 資料 分類 構成의 변화와 ‘地方官衙 記錄物群’의 형성 | 특징                |
| 3. ‘地方官衙 記錄物群’의 실태와 구조적          | 4. 記錄物의 再整 원칙과 방향 |
|                                  | 5. 맺음말            |
- 

초록: 본고는 규장각에서 史部-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로 편제된 ‘地方官衙 記錄物群’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재정리의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선 일제 강점 이래 오늘날까지 규장각의 자료 분류방식은 전통적 도서 분류법인 四部分類法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처리기관별 분류법을 일부 가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방관아가 생산한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록물군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지방관아의 업무가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기록물임에도 내용이 지방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地方官衙 記錄物群’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록물의 기원과 계통을 모호하게 하고 기록물과 생산기관의 관계 뿐만 아니라 동일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사이의 연계성을 단절시킴으로써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도를 떨어뜨렸다. 기록물은 일반 도서나 논문 처럼 지적 창작이라는 의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단체가 일정 기간에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었음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지방관아 기록물군’의 형성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이러한 분류상의 구조적 특징은 규장각 전체 자료 분류 방식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3-AM2004)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다는 점에서 지방관아 기록물군의 문제점은 규장각의 기록물군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관아 기록물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후 모색해야 할 기록물의 재정리 원칙과 방향은 규장각 역사기록물의 분류 방식 일반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분류 방식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현재의 주제별 분류 방식을 한편으로 두면서도 처리기관별 분류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기관별 기록물 목록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일반 古圖書와 私記錄物을 공기록물에서 분리해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기록물의 원질서를 복원하는 작업이 수반해야 한다. 둘째, 생산자와 편저자가 미상인 경우, 이를 조사하여 바로 잡은 뒤 해당 기록물군으로 분류하고 하위 군에 배열해야 한다. 셋째,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처리기관별 분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리 분류 체계와 별개로 검색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처리기관별 기록물군 분류방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기록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제별·기능별 분류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검색 도구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역사기록물이 규장각과 함께 국립도서관,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 대학 도서관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장각 소장 기록물과 타기관 소장 기록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원래 해당 처리기관에서 생산하고 보존하여 오다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이곳 저곳으로 분산되고 이관됨으로써 본래 기록물군의 구조가 형해화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규장각 자료는 강고한 식민 잔재와 열악한 연구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학들이 기울인 각고의 정리 작업에 힘입어 民族文化의 遺産이자 國學研究의 基幹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학계 및 일반인들의 관심과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기록관리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규장각은 이런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역사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리 과정에서 출처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류하고 원질서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어: 奎章閣, 公記錄物, 歷史記錄物 再整理, 地方官衙 記錄物群, 大韓帝國

## 1. 머리말

우리나라는 국가 성립 이래 각종 公記錄物을 생산하고 行移함으로써 사회체제를 유지·발전시켰다. 또한 공기록물 관리 규정을 두어 공기록물의 활용이 종료되면 폐기하거나 보존하도록 하였다.<sup>1)</sup> 이 때 공기록물의 폐기와 보존은 개별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공기록물의 일부는 역사적·증빙적 가치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갑오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여서 공문서의 형태와 생산·유통 방식이 바뀌었지만 기록물을 행정기관별로 보존하거나 폐기하였다.<sup>2)</sup> 이후 1910년 국망을 전후하여 공기록물들은 일반 고도서와 함께 奎章閣으로 이관되었다. 오늘날 규장각에 전근대 역사기록물을 비롯하여 다수의 근대 정부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음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물은 圖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서분류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제 분류방식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규장각에서 근대 정부 기록물의 수집·정리 과정에서 전통적인 도서 분류법이라 할 四部分類法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일제의 取調局과 參事官分室이 규장각 자료를 장악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대 정부 기록물을 일반 고도서와 구분하지 않고 四部分類法에 입각하여 분류, 정리하였다.<sup>3)</sup> 이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일제의 정리 방식을 바꾸지 못한 채 사부분류법에 따라 정리를 완료함으로써 현재 규장각 소장 자료는 사부분류법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sup>4)</sup> 아울러 근대 정부

- 
- 1) 우리나라 전근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대표 연구로 강은경, 2007 『고려시대 기록과 국가운영』, 혜안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윤훈표, 2000 『조선초기 공기록물(公記錄物) 관리제(管理制)의 개편』 『기록학연구』 2; 延甲洙, 2000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研究』 『韓國外大史學』 12; 줄고, 2000 『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 『奎章閣』 23; 박준호, 2006 『경국대전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古文書研究』 28; 김현영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古文書研究』 28; 백선혜, 2007 『『經國大典』의 기록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15를 들 수 있다.
  - 2) 이에 관해서는 金才淳, 1995 『일제의 공문서제도 장악과 운용의 실제』 『韓國文化』 16; 김진우, 2006 『갑오개혁기 『공문식』과 공문서의 변천』 『古文書研究』 29 참조.
  - 3) 이와 관련하여 田鳳德, 1984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附補遺篇』, 영인본(亞細亞文化社) 해제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의 由來』; 줄고, 1995 『日帝 強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 『奎章閣』 18; 이승일, 2001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분류 활동』 『기록학연구』 4 및 이를 수정 보완한 2007 『조선총독부의 기록수집 활동과 식민통치』 『기록학연구』 15 참조.
  - 4) 이에 관해서는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解題 참조.

기록물은 四部 중 史部에 속해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록물은 조직의 업무 수행이나 개인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고 축적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기록물은 생산기관과 매우 밀접할뿐더러 생산기관의 업무에 따라 내용 구성, 자료의 성격 등이 각각 판이하다. 그리고 기록물 사이의 연계는 개별 기록물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즉 기록물 전체는 그 부분의 산술적인 총합보다 훨씬 크다.

그리하여 기록물 정리에서는 出處의 原則을 강조하고 출처를 기초로 체계적으로 구축된 기록물 집합인 記錄物群을 중시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록물군에 속하는 기록물을 분산시키거나 서로 다른 기록물군에 편입시킬 수 없다. 반면에 규장각 소장 근대 정부 기록물들은 일반 기록물 정리의 기본 원칙이라 할 출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原記錄物群의 형태와 구조가 해체되었다. 나아가 일부 기록물의 내부 原秩序마저 형해화됨으로써 기록물간의 연계를 보여줄 수 없다.

이는 규장각 소장 지방행정기관 기록물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즉 지방행정기관 기록물은 지방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기능상, 업무상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일 주제 항목에 출처와 무관하게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과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동일 기록물군을 해체시키거나 타 기록물군의 기록물과 더불어 출처와 무관하게 무원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동일 출처 기록물 간의 연계를 단절시키고 사료적 가치를 감소시켰다.

본고는 현재 四部 분류법에 입각하여 편찬된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에서 ‘地方官衙’ 소항목으로 편제된 ‘地方官衙 記錄物群’의 실태를 집중 분석함으로써<sup>5)</sup> 지방관아 기록물군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방행정기관 기록물군을 복원하기 위해 앞으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釐整의 방향과 그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sup>7)</sup> 이 점에서 이러

5)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6) 규장각 분류 기준에 따르면 지방관아 기록물군은 엄밀하게 규정하면 部, 類, 項目, 小項目 중에서 소항목에 해당하는 기록물 집합이다. 다만 이해의 편의상 소항목이 최하위 분류군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록물군’으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아울러 여기에 속한 기록물의 명칭은 소항목 명칭을 그대로 따른다. 예컨대 지방관아 소항목에 속한 기록물은 ‘地方官衙 記錄物’이라 칭한다.

7) 여기서 ‘지방관아 기록물군’과 ‘지방행정기관 기록물군’은 별개의 범주로 전자의 경우는 주 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장각 현존의 기록물군을 가리키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필자의 구상에 따라 새로 분류되어 정리될 기록물군을 가리킨다.

한 작업은 이후 규장각 소장의 역사기록물을 再整理함에 단서를 제공하리라 본다.

## 2. 資料 分類 構成의 변화와 ‘地方官衙 記錄物群’의 형성

공기록물들은 일반 도서나 논문처럼 지적 창작이라는 의식적인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공공단체가 일정 기간에 벌인 공공업무의 결과로 생산된다.<sup>8)</sup> 그리고 이러한 기록물들은 생산 기관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동일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은 상호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시기 이전부터 공기록물은 애초부터 일반 도서와 별도로 관리되는 가운데 다시 기능과 업무에 따라 분류되어 보존되었으며,<sup>9)</sup> 조선 시기에다 마찬가지였다.<sup>10)</sup>

이후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에는 宮內府가 공기록물을 수합 정리하면서 기록물의 분류 방식과 보존기간을 새로이 설정하였다.<sup>11)</sup> 하나는 업무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궁내부 기록물을 궁내부 산하 기구의 기능과 관련하여 분류하는 방식이다.<sup>12)</sup> 이는 1909년 7월 7일부터 적용할 방식이었다. 또 하나는 형태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1907년 12월 이전에 완결되거나 편찬 중에 있는 궁내부의 역사기록물과 타 기관의 역사기록물을 정리하는 데 적용되었다. 1909년 11월에 간행된 『宮內府 記錄總目錄』을 보면 기록물은 형태별로 儀軌類, 謄錄類, 日記類, 公文類, 雜書類 등 5종으로 구분되고 있다.<sup>13)</sup> 물론 궁내부는 생산기관별로 분류하지 않았음에도 공기록물을 古圖書와 분명히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sup>14)</sup>

8) Fredric. M. Miller(조경구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리탐구, 9-51면.

9) 강은경, 2004 『고려시대 기록보존체제』 『문명연지』 5-1.

10) 이에 관해서는 윤훈표, 2000 앞 논문; 줄고, 2000 앞 논문; 백선훈, 2007 앞 논문 참조.

11) 宮內府, 1909 『宮內府規例』, ‘宮內府記錄編纂保存規程’, 1909년 6월 11일. 이와 관련하여 김건우, 2007 『구한말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관한 일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참조.

12) 김건우, 위 논문, 123면.

13) 宮內府, 1909 『宮內府記錄總目錄』(藏書閣 소장).

대한제국 궁내부는 이처럼 1909년 이전에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공기록물을 수합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작업의 주체와 의도에 관해서는 불분명하다. 향후 이는 좀더 본격적으로 검토할 과제이다.

14) 궁내부는 1909년 11월에 기록물목록과 별도로 帝室圖書目錄을 편찬하였다(宮內府, 1909 『帝

하지만 이러한 분류 구성도 일제가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강점한 뒤 규장각 자료를 장악하여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 즉 일제는 공기록물을 古圖書와 혼재시켜 ‘古圖書’라 명명하고 經, 史, 子, 集으로 분류하는 전통적 四部分類方式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sup>15)</sup>

특히 일제가 191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舊慣制度調查事業의 기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고도서와 함께 공기록물을 정리하는 가운데<sup>16)</sup> 근대 정부 기록물을 史部에 포함시킨 뒤 임의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기록물군의 본래 구조를 해체시켰다. 비록 1912년 경에는 아직 공기록물을 목록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1910년대 중반부터 목록화 작업이 본격화하자 근대 정부 기록물을 비롯한 공기록물은 史部에 편제되었다. 1916년 현재 최종 자료의 분류 번호는 ‘朝 15035’였다.<sup>17)</sup> 이후 1921년에는 공기록물들이 史部の ‘記錄類’에 포함되었지만 기록물과 생산기관의 연계가 이미 끊어진 뒤였다. 이 때 분류·정리된 자료의 최종 번호는 ‘朝 17539’로 대략 17,000여 종을 정리한 셈이다.<sup>18)</sup> 이어서 1934년에는 자료의 최종 번호가 ‘朝 19684’였다.<sup>19)</sup>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공문서들이 임의적으로 편철되어 원질서가 형해화되었다. 예컨대 1921년에서 1934년 사이에 정리된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의 경우,<sup>20)</sup> 원래의 명칭과 처리 기관(생산기관 또는 편철기관)이 각각 다른 5종의 기록물철을 하나의 기록물철로 묶어 현재의 명칭을 임의로 부여하였다.<sup>21)</sup>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분류 구성은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일제 강점기에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1921)과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補遺』(1934)의 ‘記錄

室圖書目錄’).

15) 참고, 1993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查事業’』 『奎章閣』 16; 1995 『日帝 強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 『奎章閣』 18.

16) 1910년대 일제의 규장각 자료 정리 과정에 관해서는 1995 위 논문 참조.

17)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 1916 『朝鮮圖書臺帳』.

18) 朝鮮總督府, 1921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19)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1934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補遺』, 52면.

20)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奎 17877, 1897~1904년).

21)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은 『公文來去牒』, 『照會編案』, 『農商工部』, 『量地衙門』, 『關稅課公文編案』 등 별개의 5종 기록물철이 임의로 취집되어 1종의 기록물철로 편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奎章閣所藏高宗時代公文書始開正目錄』(2008년 발간 예정) 해제 참조. 또한 이 기록물은 처음에는 『度支部各部院等來去文』으로 명명되었다가 이후 작업을 통해 현재의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으로 개명되었다(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1934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補遺』, 10면;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1059면).

類'에 편제되었던 근대 정부기록물들마저 고도서와 함께 여러 항목으로 분산·편제되었다.

우선 1960년대 전반 하버드대학 엔칭연구소의 지원에 힘입어 진행된 규장각 자료 목록 작업에서는 공기록물들의 대다수가 史部-存案類에 편제되었다.<sup>22)</sup> 즉 막대한 관아기록류의 분류를 위하여 '存案'이라는 류를 설정하였고 '존안'의 하위 분류는 그 내용에 따랐다. <표 1>은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1921)과 『규장각도서관국본총목록』(1965)을 대조하여 順天郡이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걸쳐 생산한 일부 기록물의 분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예시한 표이다.

여기서는 기록류에 포함되었던 순천군 관련 기록물이 1965년 목록 작업을 통해 세분화되면서 각각 여러 소항목으로 분산 배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분류의 기준이 重記, 完文 등 기록물의 형태에 두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順天郡戶房補聽』의 경우,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서와 편찬물이 혼재해

<표 1> 順天郡 생산 기록물의 분류 구성 비교

자료명	분류구성		비고
	朝鮮總督府 古圖書目錄(1921)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1965)	
順天郡各掌重記 (奎 12517)	史部-記錄類	史部-存案-重記	순천군이 일부 생산한 추출 기록물
順天郡史廳完文 (奎 12516)		史部-存案-完文	
[順天郡]戶房補聽 (奎 12511)		史部-政法·職官-制度	
[順天郡]社倉報草冊 (奎 12521)		史部-存案-國內去來案	
[順天郡]戶屯番執禾成冊 (奎 12513)		史部-存案-其他案冊	
雇番放賣成冊(奎 12515)		史部-存案-其他案冊	

출전: 朝鮮總督府, 1921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서울大學校圖書館, 1965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22) 서울大學校圖書館, 1965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刊行辭와 凡例.

있는 政法·職官-制度로 분류되었다. 그 밖에 여타 기관의 기록물들도 형태와 성  
 는 별개인 史部의 雜史類-日記로 분류되었다.<sup>23)</sup>

요컨대 1965년의 분류 구성은 이처럼 기록물의 기원과 계통을 보여주는 출처의  
 원칙을 고려하기보다는 주제 분류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더욱이 일제  
 부-기록류에 속했던 『帝室會計審査局日記』와 『帝室制度釐整局日記』는 기록류와  
 격에 따라 각이하게 분류되었다. 예컨대 1921년 당시 『조선총독부고도서목록』 사  
 강점 이래 四部 下位의 類가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분류의 기준마저 일관  
 성을 지니지 못함으로써 기록물군의 본래 구조는 점차 형해화하였다.

이후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규장각 자료 목록 작업을 완료하는 과정  
 에서는 주로 특정 주제나 내용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운 각 관아의 기록 및 보고문  
 류를 분류하기 위해 기존의 ‘存案類’를 해체하고 대신에 정법류 하위에 官署衙門  
 項을 별도로 마련하였다.<sup>24)</sup> 해방 이후 제2차 목록화작업인 셈이다. 여기에는 주로  
 개항 이후 근대 정부 기록류가 대거 포함되었을뿐더러 접수기관 또는 편철기관별  
 로 議政府, 宮內府, 內部, 外部, 度支部, 軍部, 法部, 學部, 農商工部, 地方官衙 등등  
 의 소항목에 배열되었다.<sup>25)</sup> 이 점에서 근대 정부 기록물이 단일 항목에 묶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을뿐더러 지방관아와 관련된 공기록물이 지방관아 소항목  
 에 편제될 수 있었다. 이는 ‘地方官衙 記錄物群’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이  
 러한 분류 방식은 주제별 분류 방식에 처리기관별 분류 방식을 가미함으로써 이  
 전의 목록화 작업에서 설정한 주제별 분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록  
 물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존안류’나 기타 류로 분류되었던 지방관아 관련 기록물들이 대거 지방  
 관아 소항목에 편제될 수 있었다. 가령 『各觀察道去來案』과 『各道郡報告書』의 경  
 우, 존안류로 분류되었다가 정법류-관서문안-지방관아로 분류되었다.<sup>26)</sup> 심지어 子  
 集의 隨錄類로 분류되었던 『嘉林報草』의 경우도 정법류-관서문안-지방관아로 분  
 류되었다.<sup>27)</sup>

23) 『帝室會計審査局日記』(奎 13033, 1905~1908년)과 『帝室制度釐整局日記』(奎 13037, 1905~  
 1908년).

24)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解題.

25) 2007년 현재 규장각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소장자료 목록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근간하고  
 있다.

26) 『各觀察道去來案』(奎 17990, 1900~1910년)과 『各道郡報告書』(奎 18020, 1907년).



그러나 이러한 기록물의 대부분은 생산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기보다는 종합적인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는 까닭에 특정 항목에 편제되지 못하고 예외로 처리된 경우에 지나지 않았다. 주제별 분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예외 방침을 일부 적용한 셈이다. 따라서 생산기관이 동일할지라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法部奏本』은 현재 史部-詔令·奏議類-奏議로 분류된 반면에 『法務衙門經費下記』는 史部の 政法類-度支-財政-中央財政-衙門會計로 분류되었다.<sup>28)</sup> 더욱이 관안문서 내부에서도 일부는 처리기관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분류되었다.<sup>29)</sup>

이처럼 공기록물은 생산기관과는 별개로 도서 분류 방식처럼 공기록물 내용의 주제나 형태에 따라 분류되었다. 이는 근대 정부 기록물이 자체의 기원과 계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즉 출처의 원칙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기관에서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목록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참고로 <표 2>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이래 오늘날까지 규장각에서 설정한 史部 하위 분류의 변천을 정리한 표이다.

<표 2> 조선후기~현재 奎章閣 史部 하위 분류의 변천

연도	1781	1866	1909	1912	1921	1965	1981
분류 내역	正史, 編年, 別史, 掌故, 地理, 鈔史, 譜系, 總目	史記, 族譜, 曆書, 御製, 策問, 教命, 輪音 등 등	正史, 編年, 記事本末, 別史, 詔令, 奏議, 傳記, 政書, 史評, 目錄	系譜記錄, 歷史雜史, 政治法律, 傳記雜記, 地理, 年表, 目錄	正史, 編年, 紀事, 野乘, 政法, 記錄, 地理, 金石, 傳記, 系譜, 年表, 目錄	正史, 編年, 別史, 雜事, 詔令, 奏議, 御製, 存案, 傳記, 報牒, 地理, 政法, 職官, 書目, 金石, 年表, 史評, 史抄	正史, 編年, 記事本末, 別史, 雜史, 史表, 鈔史, 詔令, 奏議, 傳記, 譜系, 職官, 政法, 產業, 地理, 書誌, 金石

27) 『嘉林報草』(奎 12352, 1724~1776).

28) 『法部奏本』(奎 17764), 1896~1902년)과 『法務衙門經費下記』(奎 16881, 1894년).

29) 제2차 목록화 작업에서 적용한 분류에 관해서 解題(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館韓國本綜合目錄』)에서는 “거래분류에서는 명칭이나 편자에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문안이 담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였으나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비고		部는 없 고 類만 존재	궁 내 부 는 1909년 11 월 『帝室 圖書目錄』 과 별개로 기록물 목 록인 『宮 內府記錄 總目錄』을 편찬	『書籍目錄 臺帳』의 경우, 분류 번호가 부 여되어 있 지 않음. 이후 『朝 鮮圖書總 目錄』 (1917)에는 최종 도서 번호가 朝 15025임		1965년에는 최종도서번호 가 奎 19708 임	기정리 자료 20,008종, 미 정리 자료정 리 4,785종
출전	奎章總目 (奎 4461)	西庫藏書 錄 (奎 7717) * 조선의 실 정 에 맞게 분 류방식을 재조정	帝室圖書 目錄 (奎 25243)	書籍目錄 臺帳 (奎 26768)	朝鮮總督府 古圖書目錄	奎章閣圖書 韓國本總目 錄	奎章閣圖書 韓國本綜合 目錄

### 3. ‘地方官衙 記錄物群’의 실태와 구조적 특징

2007년 현재 史部-政法類-官署文案에 편제된 지방관아 기록물군은 분류 기준의 잦은 변경과 비일관성으로 말미암아 여타 규장각 기록물군의 경우에서 보이는 여러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뿐더러 지방관아 기록물군 자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관아 기록물군의 실태와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면 규장각 소장 기록물군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지방관아 기록물군의 문제점을 추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규장각 목록상에서 지방관아 소항목에 포함된 기록물은 총 359종이다.<sup>30)</sup>

30) 奎章閣韓國學研究院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search/> 참조. 이하 기록물 소장 현

이는 官署文案 기록물 962종에서 37%를 차지하는 비율로 의정부(149종), 궁내부(100종) 등의 기록물 수량에 비해 훨씬 많다. 여기에는 해방 이전에 取調局, 參事官分室 및 京城帝國大學 圖書館 등에서 별도로 수집한 기록물 중에서 89종이 지방관아 기록물군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정에서 연유하였을 것이다.<sup>31)</sup> 그리고 1894년 이전의 기록물, 이후의 기록물 및 양 시기에 걸쳐 생산된 기록물 등은 각각 133종, 153종, 12종이며 나머지 기록물은 연대가 미상이다. 그러면 지방관아 소항목에 포함된 기록물들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관아 소항목으로 분류된 자료는 여타 소항목으로 분류된 자료와 달리 간행물이나 편찬물은 없고 오로지 기록물만 포함되어 있다. 즉 정법류 여타 소항목의 경우, 간행물이나 편찬물이 다수 포함된 데 반해 지방관아의 경우는 기록물만 포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지방관아 소항목은 ‘地方官衙 記錄物群’이라 불려도 무방하다.

둘째, 지방관아 기록물군은 생산기관별이나 접수기관별로 분류되지 않고 내용 주제별로 분류된 까닭에 편저자는 지방행정기관과 함께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 171종에 지나지 않은 데 반해 후자의 경우, 의정부 32종, 비변사 42종, 외부 15건 등 총 142종에 이른다. 그런데 이는 역으로 지방행정기관이 생산하거나 편철한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제 분류의 기준에 따라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점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례 분석에서 다뤄질 것이다.

셋째, 지방관아 기록물군은 여러 유형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여기에는 臚錄(25종), 節目(9종), 報告(30종), 重記(3종) 등 여러 유형의 기록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1965년 분류방식에서 설정했던 유형별 분류 방식 즉 등록항, 절목항, 중기항 등등의 분류 방식을 폐기하고 주제별 분류 방식을 채택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지방관아 기록물군의 이러한 실태와 구조적 특징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즉 1965년 이후 분류 작업 원칙에서 “지방관아의 항은 각 지방관청의 각종 기록류를 포괄하고 있는데, 監營啓錄, 關草, 각청 및 수

황은 여기에 의거하였다.

31) 현재 8·15 이전 수집 자료(4,181종)와 8·15 이후 수집 자료(827종)의 청구번호에 ‘古’란 명칭이 붙어 있다. 이 중 지방관아 기록물군으로 분류된 자료는 총 89종으로 1종만이 해방 이후에 수집된 기록물이다(서울大學校圖書館, 1985 윗 책, 해제).

령의 일지(臚錄, 隨錄), 특정 주제에 분류하기 어려운 절목, 원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sup>32)</sup> 규정하고 있듯이 여타 주제별 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예외 기록물들을 중심으로 지방관아 기록물군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현존의 지방관아 기록물군에 포함된 기록물 가운데 편저자가 지방기관이 아닌 경우의 기록물 자체를 분석하는 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타 기록물군에서 지방관아 생산 기록물을 찾아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경우, 내장원 편저로 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자. <표 3>은 내장원 편저의 지방아문 기록물 현황이다.

이 기록물들은 內藏院이 각 郡에서 올린 報告書를 도별로 편철한 기록물로 내장원의 경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생산 연도는 대체로 1900년 이후 1907년 사이이다. 내장원은 주지하다시피 황실 재정을 관리하는 특수 행정기관으로서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르다. 따라서 지방관아의 고유업무와 관련되기보다는 내장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관 및 민과 연계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내장원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았지만 내장원 관련 기록물임은 분명하다.

<표 3> ‘地方官衙 記錄物群’ 내 內藏院 編著의 기록물 현황

기록물명	연도	청구번호
黃海道各郡報告	光武4-11年(1900~1907)	奎 19157
咸鏡南北道各郡報告	光武4-隆熙元年(1900~1907)	奎 19161
平安南北道各郡報告	光武4-11年(1900~1907)	奎 19160
忠清南北道各郡報告	光武4-11年(1900~1907)	奎 19149
全羅南北道各郡報告	光武4-隆熙元年(1900~1907)	奎 19152
內藏院經理院各道各郡報告存案	光武4-隆熙元年(1900~1907)	奎 19163
慶尙南北道各郡報告	光武4-10年(1900~1906)	奎 19153
京畿各郡報告	光武4-隆熙元年(1900~1907)	奎 19147
江原道各郡報告	光武4-隆熙元年(1900~1907)	奎 19155
各郡各樣成冊	光武5-10年(1901~1906)	奎 19142
各郡照復書類	隆熙元年(1907)	奎 21027
各郡報告書綴	光武8年(1904)	奎 26014

출전: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32) 서울大學校圖書館, 沒 策, 海제.

다음은 지방아문 기록물군과 여타 기록물군에 포함된 기록물의 관계 및 규장각 소장 기록물 분류 방식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장각 소장 전체 기록물을 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동일 지방행정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의 분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20세기 초 淳昌郡이 생산한 기록물을 사례로 들었다.

현재 규장각 소장 기록물 중에서 순창군이 편저자로 잡혀 있는 기록물은 총 75종이다. <표 4>는 대표적인 순창군 기록물의 현황과 분류 구성을 보여준다.

<표 4>의 순창군 기록물들은 1903년부터 1905년에 걸쳐 생산된 기록물들로 청구번호가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기록물이다. 다만 청구번호가 27000대임을 고려할 때, 1965년 이후 규장각에서 정리되어 목록화된 기록물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물들은 순창군이 비슷한 시기에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방관아 기록물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11~28에 걸치는 기록물이 그러한 예이다. 즉 생산기관이 동일하고 생산 시기와 수집 시기가 매우 근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물들은 각각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즉 11~13은 소송안 항목으로, 14~15는 형명부 항목으로, 16은 검안 항목으로, 17~21은 지방재정 항목으로 22~23은 일반수세, 24~25는 군포·호세로, 26~28은 傳記-叢傳-官·軍案로 분류되었다. 심지어 17~21과 22~22 기록물이 각각 지방재정 기록물군과 일반수세 기록물군으로 분류된 방식은 대한제국기에 재정구조상 結戶錢에서 지방경비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sup>33)</sup> 기형적인 분류 방식이라 하겠다. 이처럼 기록물간의 연계와 생산기능의 업무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같은 기록물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제별 분류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기록물군으로 분류되었다.

요컨대 현재 규장각의 ‘지방관아 기록물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기록물군과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어 편저자는 여러 지방행정기관들과 함께 여러 중앙행정기관들이다. 둘째, 동일 기관에서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기관 관련 기록물이 여타 기록물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동일 기록

33) 참고, 1991 『1894~1910년 地方稅制의 施行과 日帝의 租稅收奪』 『韓國史論』 26; 유정현, 1992 『1894~1904년 地方行政制度의 개혁과 吏胥層 動向』 『震檀學報』 73.

〈표 4〉 규장각 소장의 淳昌郡 記錄物과 分類 構成

기록물명	청구번호	생산연도	분류 구성
1. 訓令置簿冊	奎 27484	1905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
2. 訓令置簿冊	奎 27488	1904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
3. 訓令總謄	奎 27477	1903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
4. 淳昌郡訓令總謄	奎 27478	1905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
5. 淳昌郡訓令總謄	奎 27476	1903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
6. 淳昌郡報告總謄	奎 27469	1904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
7. 淳昌郡報告總謄	奎 27468	1903~05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
8. 郡報告照會覆符契冊	奎 27489	1904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
9. 郡報告照會照覆符契冊	奎 27471	1904이후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
10. 捧次	奎 27428	1905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
11. 訟錄案	奎 27480	1904	政法-刑獄·詞訟-訴訟案
12. 訴訟案	奎 27481	1904	政法-刑獄·詞訟-訴訟案
13. 民狀置簿冊	奎 27474	1905	政法-刑獄·詞訟-訴訟案
14. 囚徒冊	奎 27490	1904	政法-刑獄·詞訟-刑名簿
15. 囚徒錄	奎 27485	1903	政法-刑獄·詞訟-刑名簿
16. 淳昌郡茂林面長巖里致死男人張永淑獄事初檢文案	奎 21438	1905	政法-刑獄·詞訟-檢案
17. 戶錢捧上用下冊	奎 27431	1905	政法-度支-財政-地方財政
18. 廳旅費下記冊	奎 27408	1904	政法-度支-財政-地方財政
19. 廳旅費用下冊	奎 27407	1905	政法-度支-財政-地方財政
20. 淳昌郡壬寅癸卯結戶錢用下區別成冊	奎 27452	1904	政法-度支-財政-地方財政
21. 淳昌郡壬寅癸卯結戶錢用下摠計	奎 27441	1904	政法-度支-財政-地方財政
22. 淳昌郡壬寅癸卯結戶錢上納區別成冊	奎 27440	1904	政法-度支-賦稅-地稅-一般收稅
23. 淳昌郡壬寅癸卯結戶錢未納區別成冊	奎 27463	1904	政法-度支-賦稅-地稅-一般收稅
24. 春等戶布錢捧上冊	奎 27455	1902	政法-度支-賦稅-軍布·戶稅
25. 秋等戶布錢捧上冊	奎 27457	1898	政法-度支-賦稅-軍布·戶稅
26. 淳昌郡鄉任及面掌案	奎 27499	1903	傳記-叢傳-官·軍案
27. 奴妓案	奎 27500	미상	傳記-叢傳-官·軍案
28. 官案	奎 27501	1903~04	傳記-叢傳-官·軍案

출전: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물간의 연계성을 깨뜨림으로써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를 감소시키고 비효율성을 제고하기에 이르렀다.

#### 4. 記錄物의 再整 원칙과 방향

규장각 소장 기록물은 조선후기 이래 대한제국기에 걸쳐 각급 행정기관과 왕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편철한 기록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물은 생산단계나 편철단계에서 이미 특정 기관별로 분류된 기록물군에 묶여 보존되어 왔다. 즉 이러한 기록물군은 일정한 역사와 현실 활동 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지니고 기록물이 형성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sup>34)</sup> 따라서 이러한 기록물군은 유기적인 연계를 갖는 덩어리로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록물군에 속하는 기록물을 분산시키거나 서로 다른 기록물군의 기록물을 섞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기록물군의 구분은 출처의 원칙에 입각함으로써 기록물군의 경계와 기록물군의 유기적인 전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일제는 대한제국 강점 이후 규장각 자료를 식민통치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고도서와 함께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기록물들을 고도서와 합치고 四部分類方式에 입각하여 임의적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대다수 기록물들은 史部 하위에 ‘記錄類’를 별도로 설정하고 여기에 배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배열은 오히려 생산기관이나 편저기관을 무시하고 기록류 전체로 몽땅그려 묶음으로써 본래의 처리기관별 기록물군을 해체시켰다.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즉 해방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정리 작업은 일제의 사부분류 방식에 의거한 가운데 고도서와 혼재시키고 기록물을 주제별로 세분함으로써 기록물의 기원과 계통을 모호하게 만드는 한편 동일 처리기관이 생산하거나 편철한 기록물 사이의 연계성을 약화시켰다. 이는 사료적 가치의 감소 및 활용도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사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로 편제된 기록물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이 생산될 때의 역사적 면모를 보존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다음의 원칙에 유의하면서 再整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sup>35)</sup>

34) 이와 관련하여 김유리, 2004 『중국의 기록물 분류와 기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10면 참조.

첫째, 역사기록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지키며, 둘째, 기록물건 사이의 역사적인 연계를 보호 유지하며, 셋째, 본래의 보존 방식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용함으로써 기록물군의 구분과 배열 기록물군내 기록물의 분류가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기록의 기능적 기원과 관련된 정보보다 그 기록물의 내용과 의미를 더 잘 드러내는 정보는 없다.”<sup>36)</sup> 그러나 역사기록물처럼 이미 수집이 끝난 기록물의 경우는 현재 남아 있는 기록물의 수량을 충분히 참고하여 기록물군을 구분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법류-관서문안-지방관아 기록물군을 어떻게 이정할 것인가. 이 때 기록물군으로 설정할 경우에 가정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우선 記錄物과 古圖書의 구분이다. 현재 지방관아 소항목에서는 고도서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타 소항목에서는 고도서와 기록물이 같이 포함된 경우가 자주 보인다. 따라서 고도서는 가능한 한 기록물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다만 儀軌의 경우처럼 형태는 도서 형태로 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공무 수행의 결과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물군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 公記錄物과 私記錄物의 구별이다. 현재 지방관아 소항목에서는 두 개의 사문서가 보인다. 우선 『草田結社』는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親睦契 文記로 사기록물이다.<sup>37)</sup> 또한 『安東關係書類』는 안동금융조합 서류로 역시 사기록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물들은 별도의 사기록물군으로 분류함으로써 공기록물과 분리시켜야 한다. 만일 현재와 같이 공기록물과 사기록물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록물은 금융조합 연구자가 규장각목록 전체를 검색하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없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도서에서 분리하고 사기록물을 제외시킨 뒤 어떻게 기록물군을 설정하여 관련 기록물을 배열할 것인가.

첫째, 기록물군의 구성자인 분류 단위는 행정상, 재무상, 조직인사상의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sup>38)</sup> 그러나 조선후기 이래 대한제국기에 걸쳐 職制

35) 이와 관련하여 덩샤오싱, 천즈웨이 주편(정문상 옮김), 2003 『檔案管理學概論』, 혜안, 124-127면 참조.

36) T. R. Schellenberg, 1965 *Management of Arch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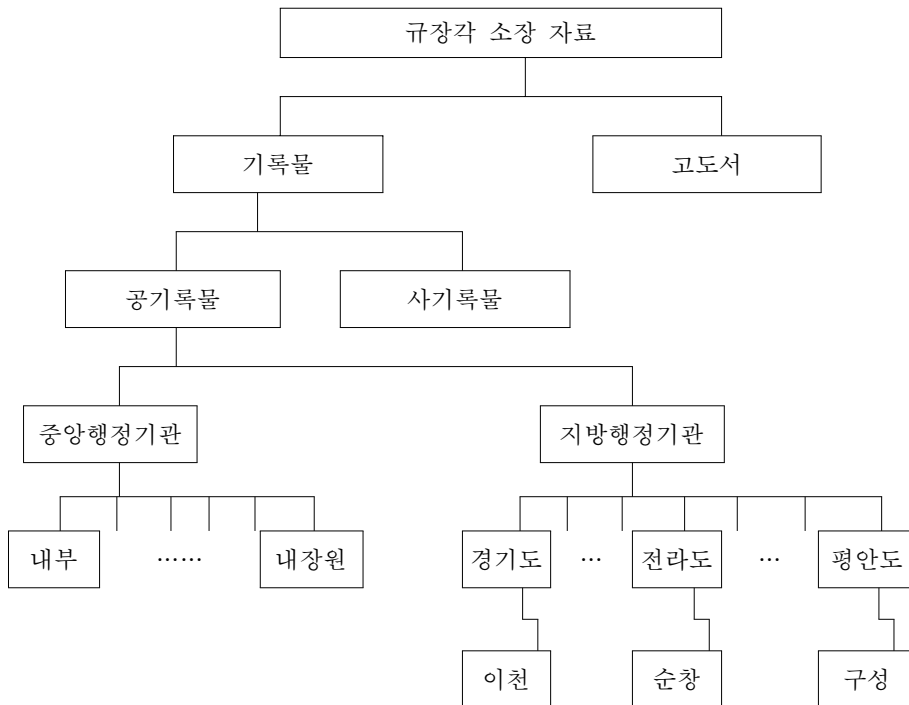
37) 『草田結社』(古 5129-19, 申彬 등 편, 19세기 후반)의 경우, 청구번호로 보아 서울대 구관도서 번호체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성제국대학 시절에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安東關係書類』(奎 22051, 탁지부 이재국 편, 1908)의 경우, 이미 규장각 청구번호가 전자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에서 경성제국대학시절 이전에 수집하거나 이관받은 기록물로 추정된다.

38) 중국과 미국에서 견지하는 기록물군 설정의 원칙에 관해서는 김유리, 앞 책, 12면과 Fredric.



改編이 수차례 단행된 까닭에 기관 분류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종 역사기록물로 정리되기 직전인 갑오·광무개혁기의 직제에 근간하여 분류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기관 기록물군의 경우, 각도 각군 행정기관을 포괄 하되 하부에는 각도별-군별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갑오개혁 이전에 생산된 지방 행정기관 기록물이 많고, 8도가 23부나 13도제보다는 덜 세분되어 있어 지방행정 기관 기록물군은 하위에 8도제를 바탕으로 삼아 기록물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한성부,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등등으로 구분 하고 해당 郡들을 각각에 배치한다. 다만 순창, 이천, 구성 등 일부 군의 경우처럼 많은 수량의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도별로 편성할 게 아니라 순창, 이천, 구성 등을 별도의 하위 기록물군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 구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규장각 기록물군의 편제



둘째, 생산기관별 또는 편저자별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기록물을 지방행정기관 기록물군에 배열해야 한다. 특히 기록물 생산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인 경우는 여러 이유로 현재 여타 기록물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지방행정기관 기록물군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에 기록물 편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여러 변수를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편철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내용상 기록물의 원천생산자가 지방행정기관인 기록물의 경우, 지방행정기관 기록물군에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기록물이 지방행정기관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근거하여 다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義州府狀啓謄錄』과 『慶尙南北道去來案』의 경우, 전자는 처리기관이 의정부, 후자는 외부 등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원천기록물은 지방행정기관이 지방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sup>39)</sup>

다음은 역으로 처리기관이 명백하게 지방행정기관이 아닐뿐더러 기록물에 담겨 있는 업무 내용도 지방행정기관의 업무라기보다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특수 업무의 경우, 지방행정기관 기록물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기록물의 출처 원칙은 해당 기관이 고유의 기능과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전제로 세워졌다. 예컨대 『平安南北道各郡報告』와 『各郡報告書輯』의 경우, 생산기관과 편철기관이 내장원일뿐더러 지방관아의 고유 기능에 근간을 두기 보다는 내장원의 특수 기능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된 기록물이다.<sup>40)</sup> 아울러 현재 政法類-訴訟案으로 분류된 『平安南北道各郡訴狀』도 내장원 업무와 관련되어 해당 지역 주민이 소장을 올린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다.<sup>41)</sup> 따라서 이 기록물들은 내장원 기록물군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규장각 청구번호가 연이어 있어 이 두 개의 기록물은 본래부터 같은 장소에 보관되었다가 이관되었다는 점을 깊이 유의해야 한다. 또 『沿途各郡案』의 경우, 현재 정법류-관서문안-지방관아로 분류되어 있지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外部가 지방각군과 왕복한 기록물로,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외부 기록물군에 포함시켜야 한다.<sup>42)</sup> 그 밖에 재판소 관련 기록물의 경우, 일반 지방행정기관

39) 『義州府狀啓謄錄』(奎 15135~2, 1877년)과 『慶尙南北道去來案』(奎 17980, 1902년).

40) 『平安南北道各郡報告』(奎 19160, 1900~1907년)과 『各郡報告書輯』(奎 26014, 1904년).

41) 『平安南北道各郡訴狀』(奎 19159, 1900~1907년).

42) 『沿途各郡案』(奎 17991, 1891~1902년).

이 아니라 사법기구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므로 재판소 기록물군에 배열해야 한다. 예컨대 『漢城裁判所來去文{2}』의 경우, 1898년(光武 2) 1월에서 1903년(光武 7) 11월 사이의 漢城裁判所와 度支部 사이에 왕복한 公文을 度支部 司稅局에서 모은 문서철이지만 내용상 재판 관련 기록물이므로 재판소 기록물군에 포함시켜야 한다.<sup>43)</sup>

셋째, 생산자와 편저자가 미상인 경우, 이를 조사하여 바로 잡은 뒤 해당 기록물군으로 분류하고 下位 群에 배열해야 한다. 예컨대 『觀察使會議』의 경우, 내용을 보면 통감부가 관찰사들을 모아 회의한 내용을 기록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임을 추정할 수 있다.<sup>44)</sup> 따라서 이는 지방관아 기록물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오히려 통감부 기록물군 또는 내각 기록물군에 배열해야 한다. 반대로 처리기관이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조사하여 지방관아의 기록물로 판명되면 지방관아 기록물군으로 분류하고 하위 군에 배열해야 한다. 예컨대 『公牒存案』처럼 원천 생산자가 特定 個別 郡이 아니고 강원도의 여러 각급 행정기관인 경우, 지방관아 기록물군으로 분류하고 하위 江原道 群에 배열한다.<sup>45)</sup>

넷째,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출처 원칙의 분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리 분류 체계와 별개로 검색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처리기관별 기록물군 분류방식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다양한 기록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제별·기능별 분류 방식을 적극 모색하여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역시 기능별 분류 사이에 통일성과 계층성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에서 1965년 미정리본 자료를 정리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46)</sup> 즉 여기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대분류하고 각각 그 하위에 중분류한 가운데 해당 기록물을 배열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검색 분류 체계 방안에 도입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國史編纂委員會에서 개발한 역사시소라스의 체계를 참고할 만하다.

끝으로 역사기록물이 규장각과 함께 국립도서관,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 여러 대학 도서관 등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장각 소장 기록물과 타기관 소장 기록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43) 『漢城裁判所來去文{2}』(奎 17890, 度支部 編, 1899~1903년).

44) 『觀察使會議』(奎 15252, 1908년 미상).

45) 『公牒存案』(奎 20060, 1896년).

46) 서울大學校圖書館, 1965 硯 책, 부록.

원래 해당 처리기관에서 생산하고 보존하여 오다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이곳 저곳으로 분산되고 이관됨으로써 본래 기록물군의 구조가 형해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물 분류 체계를 통일시키고 정보 요소를 표준화함으로써 전국의 역사기록물 보존기관에 분산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을 인터넷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 4. 맺음말

이상 규장각에서 史部-政法-官署文案-地方官衙로 편제된 ‘地方官衙 記錄物群’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再整理의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다음은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일제 강점 이래 오늘날까지 규장각의 자료 분류방식은 전통적 도서분류법인 四部分類法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처리기관별 분류법을 일부 가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방관아가 생산한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록물군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지방관아의 업무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기록물임에도 내용이 지방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地方官衙 記錄物群’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록물의 기원과 계통을 모호하게 하고 기록물과 생산기관의 관계 뿐만 아니라 동일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사이의 연계성을 단절시킴으로써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도를 떨어뜨렸다. 기록물은 일반 도서나 논문처럼 지적 창작이라는 의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단체가 일정 기간에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었음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지방관아 기록물군’의 형성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이러한 분류상의 구조적 특징은 규장각 전체 자료 분류 방식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관아 기록물군의 문제점은 규장각의 기록물군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관아 기록물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후 모색해야 할 기록물의 재정리 원칙과 방향은 규장각 역사기록물의 분류 방식 일반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분류 방식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현재의 주제별 분류 방식을 한편으로 두면서도 처리기관별 분류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기관별 기록물 목록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일반 古圖書와 私記錄物을 공기록물에서 분리해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기록물의 원질서를 복원하는 작업이 수반해야 한다. 둘째, 생산자와 편저자가 미상인 경우, 이를 조사하여 바로 잡은 뒤 해당 기록물군으로 분류하고 하위 군에 배열해야 한다. 셋째,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처리기관별 분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리 분류 체계와 별개로 검색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처리기관별 기록물군 분류방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기록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제별·기능별 분류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검색 도구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역사기록물이 규장각과 함께 국립도서관,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 대학 도서관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장각 소장 기록물과 타기관 소장 기록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원래 해당 처리기관에서 생산하고 보존하여 오다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이곳 저곳으로 분산되고 이관됨으로써 본래 기록물군의 구조가 형해화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규장각 자료는 강고한 식민 잔재와 열악한 연구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학들이 기울인 각고의 정리 작업에 힘입어 民族文化의 遺産이자 國學研究의 基幹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학계 및 일반인들의 관심과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기록관리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규장각은 이런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있다. 역사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리 과정에서 출처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류하고 원질서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강은경, 2007 『고려시대 기록과 국가운영』, 해안.  
 김유리, 2004 『중국의 기록물 분류와 기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덩샤오싱, 천즈웨이 주편(정문상 옮김), 2003 『檔案管理學概論』, 해안.  
 T. R. Schellenberg, 1965 *Management of Arch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김건우, 2007 『구한말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관한 일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金泰雄, 1995 『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 『奎章閣』 18.

- 金泰雄, 2000 『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 『奎章閣』 23.
- 김현영,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古文書研究』 28.
- 박준호, 2006 『경국대전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古文書研究』 28.
- 백선희, 2007 『『經國大典』의 기록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15.
- 延甲洙, 2000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研究』 『韓國外大史學』 12.
- 윤훈표, 2000 『조선초기 공기록물(公記錄物) 관리제(管理制)의 개편』 『기록학연구』 2.
- 이승일, 2001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분류 활동』 『기록학연구』 4.
- 田鳳德, 1984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附補遺篇』 영인본(亞細亞文化社) 해제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의 由來’.

**Abstract**

## The Structure of ‘Record Group of Local Government Office(地方官衙)’ in Kyujanggak Archives(奎章閣) and the Direction of Rearranging the Archives of this Record Group

Kim, Tae-woong

This paper aims to make clear the structure of ‘Record Group of Local Government Office’ in Kyujanggak Archives and grope the direction of rearranging the archives of this group.

To begin with, I verified that the four-part classification mode as the traditional library classification mode forms the keynote of classification mode in Kyujanggak Archiv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Record Group of Local Government Office’ in Kyujanggak Archives. Secondly, I verified that this character is the common one that the classification of all records in Kyujanggak Archives expose. This character distorted the origin of records and disjointed the structure of record group.

Therefore, I propose that the whole records in Kyujanggak Archives be classified from the standpoint of transaction organization. This work will form the base that can raise the historical and verifiable value of the records in Kyujanggak Archives.

**Keywords:** Kyujanggak Archives, public records, archival rearrangement, Record Group of Local Government Office, the Korean Empire